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7. 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6월 12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6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제1차정례회 제5차위원회 (2003. 7. 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관 재

가. 제안이유

구청사가 낡고 협소하며, 여러 동(棟)으로 분산되어 민원불편 및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대민봉사의 질적향상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구청사 신축이 시급하나, 구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 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1)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3)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 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1) 구청사 건축비

2) 구청사 건립관련 부대경비

3)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 5조)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함.

2) 위원은 구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마포구의회 의원 1인, 구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함.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마포구 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신축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신청사의 규모는 부지 16,529㎡(약 5,000평)위에 연면적 9,000평의 지하2층 지상7층으로 종합청사를 건립하고, 총사업비는 777억 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사부지는 지난 2002. 12. 9일 소유권이 이전완료 되었고 부지매입비용은 196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동 기금 조성액은 약 581억원이 될 것으로 사료됨.

<주요내용>

○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교부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안 제4조에서는 동 기금은 청사 건축비 및 부대경비와 구청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약 581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건축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건축비용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 재정형편상 완공시점인 2008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전액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성한다면 구 재정이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자연녹지지역과 자동차검사시설로 되어 있는 동 부지상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은 조속히 변경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사 건립시에는 노인전문요양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등도 함께 건립함으로써 행정타운이 조성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구 예산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건축비의 50%를 시에서 보조 받은 사례가 있음.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의회청사는?
- 답변요지(이관재 총무과장) : 종합청사 내에 위치함.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현부지 사용 계획은?
- 답변요지(조성대 행정관리국장) : 매각, 수익사업, 주민복지 제공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3. 7. 5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구의원 1인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인"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인"으로 수정함. (안 제5조제4항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생 략)</p> <p>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 구의회"라 한다) <u>의원 1인</u></p> <p>2. (생 략)</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④ (원안과 같음)</p> <p>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 구의회"라 한다) <u>의원 3인</u></p> <p>2.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0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청사가 낡고 협소하며, 여러 동(棟)으로 분산되어 민원불편 및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대민봉사의 질적향상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구청사 신축이 시급하나, 구청사 신축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는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1)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3)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다. 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1) 구청사 건축비
- (2) 구청사 건립관련 부대경비
- (3) 기타 구청장이 구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라.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도록 함.
- (2) 위원은 구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마포구의회 의원 1인, 구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함
마.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근거법령

가.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133조

나. 지방재정법(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10조

다. 지방재정법시행령(2002.12.31 대통령령 제1781호) 제156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총사업비 77,757백만원 예상(부지매입비기투자 19,657백만원)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3. 4.30~5.20)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06.09)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축비
2. 청사 건립관련 부대경비
3. 기타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구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인
2. 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

④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서기는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 원)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출 납 부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결재	담당	과 장
				협조	담당주사	
				결재		
				협조		
				결재		
				협조		
				결재		
				협조		